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현직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 포함)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를 위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양성위원회에 졸업생으로서 현직교원(입직 후 경력 3년 이상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의 이수를 교원자격 검정의 필수 기준으로 개정

3. 주요내용

가. 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

(안 제4조제4항제1호)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다. 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라. 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38학점”을 “30학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
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1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
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
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을 최소한
한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것”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년 1월 1일 이후 구성하는 교원양성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 ~ ③ (생략)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 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 ----- ----- ----- ----- -----.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u>38학점</u> 이상 이수한 자	1. ----- ----- ----- ----- ----- ----- <u>30학점</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경력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8조(교육경력력의 범위) ①----- ----- ----- ----- ----- -----.

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 양성위원회) ① (생략)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	1. ----- ----- ----- ----- ----- ----- ----- <u>「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u>-----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 양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 로서 <u>15년</u>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 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 ----- ----- --- <u>3년</u> ----- ----- -----
2. 3. (생 략) <u><신 설></u>	2.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 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 원을 최소한 한명 이상 포함하 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4. (생략) 5. (신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4. (현행과 같음)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976